

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3년 10월 4일
- 회부일자 : 2003년 10월 6일

3. 제안이유
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입장요금을 조정하고,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청남대운영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
- 입장료 징수에 있어서 국가·독립·참전·광주민주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함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청남대운영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
- 입장료 징수에 있어 국가·독립·참전·광주민중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
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